

예금계좌 (신고)·(변경신고)서				
문서번호				
구 분	예 금 주	금융기관명	계 좌 번 호	비 고
변 경 전	수 입 용			
	지 출 용			
변 경 후	수 입 용			
	지 출 용			
<p>「정치자금법」 제34조제4항제1호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·지출용 예금계좌를 (신고)·(변경신고)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 년 월 일 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10px;"> ○○○ (인) </p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</p>				
<p>※ 구비서류 : 예금통장 사본 각 1부</p>				
<p>주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,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. 2. 신고인은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인 정당(정책연구소,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)대표자, 후원회대표자,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,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, 당대표경선후보자등,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, 선거연락소장이 됩니다. 3. 예금계좌 신고시에는 "변경후"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 				